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01
----------	-----

2021. 4. 30.(금)  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4월 13일

나. 발 의 자 : 송미애 의원 등 7인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제390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
(2021년 4월 23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송미애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도내 소상공인 종합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함
- 현행 조례에서 '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'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, 코로나 19 피해지원금 지급 혼선의 문제로 '사업장을 둔 소상공인'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(안 제3조)  
(당초)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→ (변경) 사업장을 두고

-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, 전문성 있는 도의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8조, 안 제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#### 가. 제출배경

- 소상공인은 우리 도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4%, 전체 종사자 수의 31%를 차지하여 도민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음식·숙박업, 도·소매업 등 생계형 업종에 속해 있어, 이로 인한 **과다경쟁 등으로 휴·폐업 및 도산위기**에 내몰리고 있음
- 또한,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산업·경제 분야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
- 이에, 자금지원 단계에서부터 유망업종 창업, 성장지원, 폐업에서 소상공인 직업전환까지 **개별 맞춤형 종합 컨설팅이 가능한 전담기관**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

#### [ 사업체 및 종사자 ]

-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충북에는 13만개의 사업체에 74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, 이중 소상공인은 11만개(84%) 사업체에 23만명(31%)이 종사하고 있음

구분	충북도		전국	
	전체업체	소상공인	전체업체	소상공인
사업체수(개)	133,522	111,894(84%)	4,176,549	3,464,399(83%)
종사자수(명)	741,452	226,152(31%)	22,723,272	6,993,361(31%)

#### [ 소상공인 생존율 ]

- 창업 후 1년 60.1%, 3년 38.2%, 5년 29% (중소벤처기업부)

#### 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임
  - 현행 조례에서 “충청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”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(제3조)1)

-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급 혼선의 문제로 감사원은 조례의 지원대상을 “사업장을 둔” 경우로 한정하길 요청한 바 있음

\* A, B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대상을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는 경우 A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B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두 지자체에서 모두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

- 안 제8조, 안 제9조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)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
-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(창업-성장-재기 및 직업전환)로 컨설팅 및 자금, 직업전환 교육 등 맞춤형 원스톱 종합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성장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
- 타 시·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현황

구분	명 칭	대행기관	운영인력
서울	자영업지원센터	서울신용보증재단	42
부산	소상공인희망센터	부산신용보증재단	6
대구	소기업 & 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	대구신용보증재단	9
인천	소상공인디딤돌센터	인천신용보증재단	6
광주	소상공인지원부	광주경제고용진흥원	5
대전	소상공인지원센터	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	6
울산	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	울산신용보증재단	6
경기	(재)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	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	80
강원	전통시장지원센터	강원도경제진흥원	6
<b>충북</b>	<b>미운영</b>		
충남	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	충남경제진흥원	5
전북	소상공인희망지원센터	전북경제통상진흥원	12
전남	자영업종합지원센터	전남신용보증재단	4
<b>경북</b>	<b>미운영</b>		
경남	소상공인지원팀	경남경제진흥원	9
제주	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	제주경제통상진흥원	8
<b>세종</b>	<b>미운영</b>		

1) 「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」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지원 대상 범위를 “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
- 소상공인은 산업화와 함께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산업구조 고도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에 비하면 열악한 기업환경으로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- 이러한 측면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상권 분석이나 사업계획 검토, 세무, 회계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
- 다만, 소관부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철저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기관 선정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 감독 강화로 예산 낭비 없는 업무 효율화 추진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주소와 사업장”을 “사업장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원”을 “실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9조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소상공인지원센터)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중전의 제8조)제1항 중 “제6조”를 “제6조 및 제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에 <u>주소와 사업장</u>을 두고 「소득 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 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적용범위)----- ---<u>사업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지원사업)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<u>지원</u>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법 제12조의2에 따른 재해·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</u></p> <p>5. ~ 7. (생략)</p>	<p>제6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<u>실시</u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<u>소상공인기본법</u>」 제29조에 따른 <u>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</u>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	<p>제8조(소상공인지원센터) ① 도지사는 <u>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<u>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8조(사무의 위탁)</u> ① 도지사는 <u>제6조</u>의 사무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도의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·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<u>제9조(시행규칙)</u> (생략)</p>	<p><u>제9조(사무의 위탁)</u> ① -----<u>제6조</u> 및 <u>제8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필요한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10조(시행규칙)</u> (현행과 같음)</p>

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소상공인기본법

제29조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##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내 소상공인 일원화 창구 운영으로 성장률 제고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소상공인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(인건비, 운영비) 발생
- 소상공인 지원 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발생

### 3. 관련조문

- 안 제8조 소상공인지원센터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비용은 지속발생, 추계는 2021년~2025년까지 5년으로 함
- 인 건 비 : 위탁기관 자체 직급별 임금 지급기준에 의함

#### 나. 추계 결과

- 산출과정
    - 센터 운영비 : 2,000,000원×6개월 = 12,000천원
    - 사무공간조성 : 50,000,000원×1식 = 50,000천원
    - 인 건 비 : 3,500,000원(팀장)×6개월×1명=21,000천원  
2,833,000원(팀원)×6개월×5명 = 85,000천원
    - 사 업 비 : 창업·경영아카데미 등 3개 사업 250,000천원
  - 산출결과 : 연간 418백만원, 2021년부터 5년간 총2,362백만원 소요
-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#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
세 출	2,362	418	486	486	486	486
센터 운영비	108	12	24	24	24	24
인건비	954	106	212	212	212	212
사무공간조성	50	50	-	-	-	-
사업비	1,250	250	250	250	250	250